

#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olicy Directio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D-County -

Jae-Nam Kim \*

## 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olicy directio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For this, it aims to draw implications about the policy directio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using basic investigation of welfare for the disabled among 2<sup>nd</sup>, 3<sup>rd</sup> community social welfare plans of Jeollanam-do. As study results, it was analysed that the demand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is increasing from providing the past livelihood such a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basic livelihood to customized welfare service such as supplying job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That is judged to be caused by needs for human's basic rights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 income level, and it will be appropriate to set up the software-focused policy for the disabled individuals rather than to set up the hardware-focused policy like the past. Despite the implications like these,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 that its subject is restricted to D-gun, so henceforth it needs to draw more general conclusions through comprehensive research about more extensive regions.

▶ Keyword : Human Rights, The Disabled, Welfare for the Disabled,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Welfare Needs

## I . Introduction

과거 장애인은 '복지의 문제'는 논할 필요도 없이 무술적 또는 종교적 영향력에 기인한 우생사상(優生思想)의 영향으로 이 사회의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인간으로서 존엄성 까지도 위협 받았었다. 그러다가 이후 시대의 발달에 따라 제한적 보호가 필요한 자, 치료나 교육이 필요한 자 등으로 인식이 변화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동되었으며, 이후 1976년 UN 제31차 총회에서 1981년을 「국제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IYDP)」로 정하여, '완전참가와 평등'을 주제로 장애인복지를 확산시켜, 그 이념 또한 'Rehabilitation'에서 'Normalization'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1]. 또한 이 총회에서는 "모든 국가는 장애

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신장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우리 정부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1981년부터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여 왔으며 1989년에는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면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정하고 1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2].

이처럼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처음에는 그 개념조차 생소하던

---

• First Author: Jae-Nam Kim, Corresponding Author: Jae-Nam Kim  
\*Jae-Nam Kim (jnkim@kwu.ac.k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16. 12. 02, Revised: 2016. 12. 05, Accepted: 2016. 12. 07.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kwu I16-011

시기에서부터 현재는 경제 발전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실현 욕구에 기인하여 점차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4년 단위의 시·군·구 및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의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이후 4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년~2018년)」을 시행 중에 있다[3].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인식과 이에 따른 정책 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D군의 제2기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설문 조사와 그 결과를 재가공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II. Theoretical Background

### 1. Disabled

장애인(disabled, 障碍人)은 “국제적으로 무언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 영속적 또는 일시적일지라도 그 기능이 장애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법제도적으로는 개별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5]. 다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 즉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관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8].

이상에서와 같은 학문적 의미의 장애인과 법제도적인 장애인의 차이점은 후자는 전자와는 다르게 일시적인 장애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원인질환에도 제약이 있으며 그 범위가 좁으며, 대상에 있어서도 장애 유형별로 ‘지체부자유·내부장애· 시각장애·청각장애 등의 신체장애인과 정신신체·조현증(정신분열증)·간질 등 정신장애인’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 2. The Welfare of the Disabled

장애인복지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현대사회로 진입하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장애인 정책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속해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편의와 요구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9].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달리하여, 장애가 중증일수록 보호의 비중이, 경중일수록 재활의 비중이 초점을 두고 ‘진단 및 판정,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회 및 심리재활, 직업재활, 지역사회개발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역사회조직의 활성화, 사회적응 유도, 자원봉사

.Table 1. Trend of Demographic Changes

Unit : Person

Year Eup, Myeon	Total Population	Total	Gender		Degree of Disabilities					
			Male	Female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2008	48,949	3,795	2,152	1,643	327	680	638	607	802	741
2009	47,886	3,987	2,223	1,764	-	-	-	-	-	-
2010	48,448	4,067	2,235	1,832	317	639	657	667	919	868
2011	48,483	4,041	2,196	1,845	305	609	669	652	928	878
2012	48,361	4,041	2,189	1,852	300	586	681	651	912	911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compared to 2008	-0.3%	1.6%	0.4%	3%	-2.1%	-4%	1.6%	2%	3.3%	5%
	-1.20%	6.48%	1.71%	12.7%	-8.255	-13.8%	6.73%	7.24%	13.7%	22.9%

Data : D-County statistics yearbook(2013)

인력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0].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생활안정(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11].

### III.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abled Welfare in D County through 「Community Welfare Planning」

#### 1. Trend of Demographic Changes

2008년부터 2012년까지 D군 장애인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 전체 인구는 2008년 3,795명에서 2012년 4,041명으로 6.48% 증가하였으며, 특히 4급 장애인이 607명에서 651명으로 7.24% 증가하여 증가율이 다른 급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D군의 총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장애인 인구/총인구)는 2008년 7.75%에서 2012년 8.36%로 6.1% 증가하였다.

#### 2. Current state and Trend in Disability types

2012년 기준 D군의 장애인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 유형이 2,035명 50.4%로 가장 많은 수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청각' 유형이 544명 13.5%, 다음으로 '뇌병변' 유형이 388명 9.6%, 다음으로 '시각' 유형이 383명 9.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D군의 장애인 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 유형이 2008년 1,913명에서 2012년 2,305명으로 5.9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각' 유형이 2008년 496명에서 2012년 544명으로 9.67% 증가, '뇌병변' 유형이 2008년 352명에서 2012년 388명으로 10.2% 증가, '시각' 유형이 2008년 347

명에서 2012년 383명으로 10.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Analysis on Difference of Recognitio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먼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 있어서는 2010년에는 '직업, 의료, 저소득'의 문제가 각각 52.0%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뒤로 '집단 및 가사문제'가 48.0%, '부양'이 44.0%, '사회적 문제'가 38.0%, '여가문화 문제'가 34.0%, '자녀양육'이 30.2%, '부채'가 26.6%, '정신건강'이 24.0%, '가족관계'가 22.2%의 순서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 방법으로는 '어렵지만 그냥 참고 살기'가 32.0%로 가장 높았으며, '스스로 해결해 나감'이 16.0%, '가족의 도움으로 해결함'이 14.0%, '면사무소의 도움으로 해결함'이 12.0%, '군청(지자체)에서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음'이 10.0%, '복지기관, 종교단체의 도움' 등의 순서로 해결하고 있었으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으로부터 도움이 제공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55.4%가 '참여할 의향이 있음', 23.4%가 '참여하고 싶지 않음', 21.3%가 '모르겠음'이라고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2014년에는 잘 모르겠다와 보통이다를 제외하고,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은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이 28.6%,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33.3%, '여가, 취미, 문화 활동의 어려움'이 14.3%로 조사되었고, 대체로 심각하다는 인식은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어려움'이 19.0%,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23.8%, '장애의 재활치료(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이 33.3%, '이성교제 및 결혼의 어려움'이 19.0%로 조사되었고,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14.3.0%,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가족들 간의 불화'가 14.3%로 조사되었으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에 대해 대체로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가 23.8%로 각각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 2010년에는 인지도 조사 결과 보건

Table 2. Current state and Trend in Disability types

Unit : Person

Year Eup, Myeon	Gender			Disability types														
	Total	Male	Female	physical disability	brain lesions	visual impairment	hearing impairment	speech impediment	intellectual disability	autism	mental disorder	kidney disorder	cardiac lesion	respiration difficulty	hepatopathy	Facial disorder	intestinal fistula	epilepsy(Etc)
2008	3,795	2,152	1,643	1,913	352	347	496	33	335	6	171	142	7	26	7	4	13	27
2009	3,987	2,223	1,764	2,026	359	366	528	33	341	6	175	153	9	26	7	4	14	35
2010	4,067	2,235	1,832	2,067	377	376	556	28	350	5	174	57	7	24	8	3	9	26
2011	4,041	2,196	1,845	2,041	377	379	558	28	352	6	172	54	6	19	8	3	11	21
2012	4,041	2,189	1,852	2,035	388	383	544	27	360	7	166	59	6	21	8	3	14	20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compared to 2008	6.48%	-1.69%	12.7%	5.99%	10.2%	10.3%	9.67%	18.1%	7.46%	16.6%	-2.92%	-58.4%	14.2%	19.2%	14.2%	-25.0%	7.69%	25.9%

Data : D-County statistics yearbook(2013)

소는 98.0%, 자활센터는 48.0%, 자원봉사센터는 40.1%, 성폭력상담소는 36.0%, 청소년수련관은 44.0%,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4.0%로 조사되었다. 복지시설 이용이 힘든 이유로는 '너무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이 35.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용하지 않음'이 25.0%, '시간을 낼 수가 없음'이 14.0%로 조사되었다. 한편 2014년에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40.9%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86.4%가 이용한 적 없다고 하였고, 4.5%가 향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하였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50.0%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90.9%가 이용한 적 없다고 하였고, 4.5%가 향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하였다. 주간·단기 보호 시설(낮 병원 포함)에 대해, 63.6%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86.4%가 이용한 적 없다고 하였고, 13.6%가 향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하였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근로, 보호 작업시설 등)에 대해, 68.2%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86.4%가 이용한 적 없다고 하였고, 13.6%가 향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용방법을 잘 모름'이 50.0%의 비율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움과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함'이 18.2%, '거동이 불편함'이 9.1%, '서비스의 질이 낮음'이 3.2%, '비용이 부담됨과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은 무응답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지역 내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2010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10.0%가 만족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4.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회복지인력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10.0%가, 친절도에 있어서는 42.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36.0%,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6.3%, 서비스 안내에 있어서는 20.9%가 만족한 것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10.0%, 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8.0%, 서비스의 통합성에 있어서는 16.0%, 서비스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18.0%만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들이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나 경험, 혹은 이용의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63.2%가 알고 있다고,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46.9%가 모른다고, 재활 병의원에 대해서는 30.6%가 모른다고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는 '고용지원 서비스'가 31.8%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이 22.7%,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이 18.2%,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와 재활훈련 그리고 주거환경의 개선'이 각각 9.1%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이성교제 및 결혼 지원 사업, 장애아동 및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도, 일상생활지원(가사활동, 외출, 목욕 등), 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에 대해서

는 무응답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2010년에는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와 경험여부에 대해 의료서비스에 대해 60.5%, 교통 및 이동서비스에 대해 54.6%, 재가서비스에 대해 62.5%, 소득보장에 대해 75.0% 등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주거서비스에 대해서는 42.8%, 사회재활에 대해서는 29.8%, 여가활동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7.1%의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에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 77.3%가 보통, 만족하는 편이 아니다가 13.6%, 만족하는 편이다가 9%로 조사되었고,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에 대해, '단순임가공(포장, 조립, 운반) 및 생산'이 45.5%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자조립'이 13.6%, '공예, 정보처리(컴퓨터관련), 상업디자인 그리고 의료(안마, 마사지 등)'가 9.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IV. Conclusion

이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D군의 제2기와 제3기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기초 수요 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에 있어서는 2010년과 2014년 모두 '직업, 의료, 저소득'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서, 2010년과 2014년 모두 낮은 인지도 및 이용 경험이 없는 결과가 조사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2010년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 다가오는 2018년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에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지역내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는 2010년에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결과가 조사되었던 반면에 2014년에는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과가 조사되어 이는 정책적 함의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요는 과거의 장애인들의 기초 생활 기반 마련 등의 생계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이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 발전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실현 욕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 수립 보다는 장애인 개개인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대상을 D군에 국한되어 연구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된 결론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1]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_xno=29299](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_xno=29299)(2016.10.15. Searching).
- [2]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4.
- [3] Jae-Nam Kim,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according to the Perception Change of the Welfare Service of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0(7), p.123, 2015.
- [4]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Mosbys Medical Nursing & Allied Health Dictionary」, 2004.
- [5]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
- [6]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Article 2(1).
- [7]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2.2.
- [8] Promotion of Disabled Persons' Enterprise Activities Act, Article 2(1).
- [9] Yang, Jung-Ha et al, 「Social welfare policy」, Yangseowon publishing, 2009.
- [10] Lee, Jun-Sang-Lim, Eun-Ja,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s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Disabilities in Tae-gu city,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15(1), p.64, 2005.
- [11]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hapter II Formulation of Fundamental Policy.

### Authors



Jae Nam Kim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Computer Science and Statistics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84, 1989 and 2006, respectively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Kwangju, Korea, in 1992.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Welfare Information System, Welfare Statistics.